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3장 휴가

제18조(연가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11.5, 2014.12.30., 2019.2.26.>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또는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신설 제 1339호 97. 3. 27><개정 2008.11.5., 2013.12.30., 2014.12.30., 2017.12.31., 2019.2.26.>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또는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 각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08.11.05, 2014.12.30.>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개정 제1339호 1997.03.27, 2008.11.05, 2010.12.17, 2013.12.30>

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04.04, 2002.05.21, 2010.12.17>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0.12.17>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text{개월} - \text{해당연도 휴직기간(개월)}) \div 12\text{개월}\} \times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개정 2002.05.21, 2008.11.05>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1997.03.27, 2008.11.05., 2017.12.31.>

④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아니한다. <개정 1997.03.27, 2008.11.05, 2013.12.30>